

「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10. 16.

임실군의의회의장



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맨발걷기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 안 제2조)
- 나.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부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0. 16. ~ 2023. 10. 20. (4일간)
- 라. 불 입 : 조례안,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관계법령

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,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 산책로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.

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다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라. 그 밖에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임실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, 등산로, 탐방로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 시 맨발 산책로의 조성·확충
2. 세족대, 해충퇴치기,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관리
3. 맨발걷기 관련 문화·예술·학술 사업
4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 :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

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

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·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

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

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

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

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